

I

라벨링 및 유기농 제도

1. 미국의 유기농 제도

1) 유기농의 정의 및 기준

- 유기농산물이란 합성비료, 방사선처리, 하수오니 (하수 침전물 찌꺼기), 합성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을 이용해 재배한 작물을 뜻함 (유기농 인증을 받은 특정 농약은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가능)
- 미국 유기농 제도는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이 제정된 후, 주 정부, 민간기관 등을 통해 인증되어 오다가 지난 2002년 10월, 국가 유기 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NOP) 로 일원화 되었고, 행정 및 관리기관으로는 미 농무부 마케팅 지원청 (USDA AMS) 이 있음
- 미국 내 유기농 생산 및 취급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 성분과 물질은 미 농무부 마케팅 지원청의 규정 § 205.600 - 205.62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선정기준으로는 해당 물질의 자연 출처로부터 생산 가능 여부,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처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물질이 FDA의 GMP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에 따라 사용될 경우, FDA에서 정한 허용치 초과유무 등이 있음

2) 유기농 인증 및 집행

- 미국 유기농 인증은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015년 기준, 80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있으며 미국 내 48개, 미국 외 32개가 존재함. 미국을 포함 전 세계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OrganicCertifyingAgentsbyCountry.pdf>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거나 NOP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고의적으로 유기농 제품으로 표기, 판매한 업체는 최고 1만 1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미국 농무부의 유기성분 함량에 따른 유기표시 및 유기로고 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

유기성분 함량	로고사용 가능여부	유기표시
100% (물, 소금 제외)	가능	100% 유기
95%이상	가능	유기 (Organic)
70-95% 미만	불가	유기로 제조 (made with organic)
70% 미만	불가	특정 유기성분 표시

3) 유기농 제품의 국제무역협정 및 현황

- 미국 의 수입농산물 인증에 대한 규정 및 협정관련 사항은 미국연방규정집 (CFR) Part 205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유기 프로그램 (NOP)를 통해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다.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정

○ 상호인증협정 (Recognition Agreement) 을 통한 인정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인정받는 것이 아닌,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농무부가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을 평가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을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유기농 인증을 할 수 있음. 미국은 현재 탄자니아,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일본 (2014년 9월까지) 등을 상호인증협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

○ 상호동등성협정 (Equivalency Agreement)을 통한 인정 : 미국 농무부에서 미국의 국가 유기 프로그램 (NOP) 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상호동등성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인증 및 로고를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이 해당 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4) 시사점

- 2014년 미국 유기농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359억 달러로 미국 전체 식품시장의 약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약 11%이상 증가한 수치임 (식품을 제외한 기타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2014년 미국 전체 유기농관련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391억 달러)
- 위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유기농식품시장은 미국 전체 식품시장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져감에 따라 유기농식품은 물론 관련 제품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USDA 유기농인증로고의 부착유무가 판매량은 물론 소

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유기농인증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유기농인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기농제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관련 웹사이트

<http://fnic.nal.usda.gov/>

<http://www.ams.usda.gov/>

<http://nanet.go.kr/>

II

2015년 8월 미국 뉴욕 한국 농수산물식품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발생 일자	품목	기관	기관 조치 사항	사후 처리 사항	결과
2015-08-01	치즈 감자칩	FDA	적합한 라벨 부착 미비로 인한 샘플 요청	전반적인 라벨 수정 및 재승인 완료	보류 해제
2015-08-05	전통 과자	AQI/CBP & VS/APHIS	제품성분표 및 수입허가증 요구	수입허가증 및 검역증 제출	보류 해제
2015-08-07	사카린 감미료	FDA	적합한 라벨 부착 미비로 인한 샘플 요청	사카린이 식품성분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라벨 수정 및 재승인 완료	보류 해제
2015-08-10	즉석 컵밥	B&H Consultant	식품에 함유된 탄산나트륨, 가티검, 탄산칼슘 등의 성분 허용유무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 결과, 허용 가능	보류 해제
2015-08-10	짜장면 & 소스	FDA	적합한 라벨 부착 미비로 인한 샘플 요청	전반적인 라벨 수정으로 인해 식품 알레르기 부문을 추가했지만 치자황색소 허용 불가	폐기 처리
2015-08-19	초콜릿 크림 비스켓	AQI/CBP & VS/APHIS	제품성분표 및 수입허가증 요구	수입허가증 및 검역증 제출	보류 해제
2015-08-19	건오징어	FDA	살모넬라균 감염 의심으로 인한 자동압류조치 (DWPE)	외부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음성판정	보류 해제
2015-08-19	아스파탐 감미료	FDA	적합한 라벨 부착 미비로 인한 샘플 요청	페닐알라닌 성분 미표기로 인해 라벨 수정 및 재승인 완료	보류 해제
2015-08-20	두유 드링크	FDA	규정에 맞지 않는 라벨 및 FCE (공장등록) 및 SID (공정과정등록) 번호 제출 요구	FCE (공장등록) 및 SID (공정과정등록) 번호 미제출	반송 처리
2015-08-21	만두	FDA	규정에 맞지 않는 라벨	전반적인 라벨 수정 및 재승인 완료	보류 해제
2015-08-27	아이스 바	AQI/CBP & VS/APHIS	제품성분표 및 수입허가증 요구	수입허가증 및 검역증 제출	보류 해제
2015-08-27	라면	FDA	적합한 라벨 부착 미비로 인한 샘플 요청	전반적인 라벨 수정 및 재승인 완료	보류 해제
2015-08-31	우영 맛 드링크	AQI/CBP & VS/APHIS	젖산 (Lactic acid) 함유로 인해 수입허가증 및 검역증 제출 요구	수입허가증 및 검역증 제출	보류 해제